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(서지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22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2.

발 의 자 : 서지영 · 정연욱 · 김은혜
이인선 · 곽규택 · 박성훈
이헌승 · 강승규 · 정성국
조승환 · 박수민 · 김용태
김승수 · 최수진 · 김미애
서천호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일반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.

이에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담배와 같이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, 광고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등).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의 제목 중 “담배”를 “담배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담배사업법」에 따른 담배”를 “전자담배(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나 「담배사업법」에 따른 담배(이하 “담배등”이라 한다)”로, “담배갑포장지 앞면·뒷면·옆면”을 “담배갑포장지 또는 담배포장용기(이하 “담배갑포장지등”이라 한다)의 앞면·뒷면·옆면”으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담배갑포장지”를 “담배갑포장지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담배”를 “담배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담배갑포장지의”를 “담배갑포장지등의”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담배갑포장지”를 “담배갑포장지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”를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”로 한다.

제9조의3 중 “담배”를 “담배등”으로 한다.

제9조의4의 제목 중 “담배”를 “담배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담배”를 “담배등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

“지정소매인”을 “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또는 지정
소매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「담배사업법」에 따른 도
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”을 “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
자, 「담배사업법」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”으로 하며, 같
은 항 후단 중 “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”을 “전자담배를 직접 소비
자에게 판매하는 자,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”으로 하고, 같은 조
제3항제1호 중 “담배”를 “담배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담배”
를 “담배등”으로 한다.

제31조의2제4호 중 “담배”를 “담배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2의 개정
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
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9조의2(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) ① 「담배사업법」에 따른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 판매업자(이하 “제조자등”이라 한다)는 담배갑포장지 앞면·뒷면·옆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(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.	제9조의2(담배등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) ① 전자담배(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나 「담배사업법」에 따른 담배(이하 “담배등”이라 한다)-----담배갑포장지 또는 담배포장용기(이하 “담배갑포장지등”이라 한다)의 앞면·뒷면·옆면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담배갑포장지등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암성물질	4. 담배등----- -----

가. ~ 바. (생 략)

5.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 앞면,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.

③ (생 략)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·형태 등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.

제9조의3(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)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(이하 “가향물질”이라 한다)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·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

5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담배갑포장지등의-----

-. -----담배갑포장지등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-----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-----

-----.

제9조의3(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) -----담배등-----

-----.

제9조의4(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)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.

1.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(展示) 또는 부착하는 행위. 다만,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~ 4. (생략)

② 제조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광고를 「담배사업법」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이 한 광고는 제조자등이 한 광고로 본다.

③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·종

제9조의4(담배등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) ① 담배등-----

1.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또는 지정소매인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, 「담배사업법」에 따른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-----.

-----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, 도매업자 또는 지정소매인-----

③ -----

1. -----담배등-----

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2. ~ 4. (생 략) ④ 제조자들은 <u>담배</u>에 관한 광고가 제1항 및 제3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. ⑤ (생 략) 제31조의2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~ 3. (생 략) 4. 제9조의4를 위반하여 <u>담배</u>에 관한 광고를 한 자 5. · 6. (생 략)	----- -----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④ -----<u>담배등</u>----- ----- ----- -----. ⑤ (현행과 같음) 제31조의2(벌칙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<u>담배등</u>----- ----- 5. · 6. (현행과 같음)
--	---